

# 책임 있는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의 합리적인 위험분담을 위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건의안

의안 번호	567
----------	-----

발의년월일 : 2023년 3월 7일

발 의 자 : 교통위원장

## 1. 주 문

-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저조한 수요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협약이 중도해지됨에도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막대한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는 등 서울시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재정분담이 없어 형평의 원칙과 손실의 합리적인 분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실정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있는 민간투자사업시행을 도모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의 합리적인 위험분담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하 ‘민투기본계획’)을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정을 건의함

## 2. 제안이유

- 그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적극적인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도시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조달 및 민간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해 왔음
- 그 중 하나의 사례인 우이신설경전철은 서울 강북 일대 교통소외 지역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BTO 방식으로 추진된 서울특별시 제1호 경전철 사업으로 2017년 개통하였음. 그러나 예측수요 대비 낮은 실수요, 과도한 무임비율로 인한 누적적자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상황임
- 현재 ‘민투기본계획’에서는 해지시지급금의 산정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 해지시에도 사업시행자의 선순위차입금 잔액을 보장토록 하고 있음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및 실시협약 체결 시 ‘민간투자법’ 제 8조의2, 제10조 및 제13조와 ‘민투기본계획’의 민간투자사업의 세부 추진절차와 방법 등을 적용하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및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따라서, 저조한 수요로 인한 사업시행자 파산 및 실시협약 중도해지는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임에도 민투기본계획에 따라 체결한 실시협약으로 인해 막대한 해지시지급금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에 대해서 별도의 국비 분담 없어 주무관청인 서울시의 재정으로 지급해야 하는 실정임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은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사항이며,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 및 실시협약 체결 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

자관리센터 검토 및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내 설치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여부에 관한 책임은 주무관청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있음

- 또한, 해지시지급금은 건설 시 투입된 민간사업비에 대한 보전의 성격을 가지고 건설보조금 중 일부를 국비로 분담하고 있는 바 해지시지급금 또한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일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사업시행자의 책임 있는 사업시행을 도모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의 합리적인 위험분담을 위해 민투기본계획을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나. 기타사항: 없음

### 4. 이 송 처

#### 가. 국 회 :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나. 정 부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 책임 있는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의 합리적인 위험분담을 위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건의안

그간 서울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조달 및 민간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서울시 제1호 경전철 사업으로 우이신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였다.

현재 우이신설 경전철은 예측대비 저조한 수요 및 무임비율 과다로 인한 운영적자 누적으로 파산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인한 실시협약의 중도해지 및 이에 따른 막대한 해지시지급금 지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시협약 체결의 기준이 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이하 ‘민투기본계획’이라 함)에서는 해지시지급금의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업시행자의 선순위차입금 잔액을 주무관청이 보전토록 하고 있어 서울시의 막대한 재정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민투기본계획’을 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방만운영 및 자구노력 없는 무책임한 실시협약의 중도해지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예측 등 민간투자사업의 검토 및 심의를 담당한 중앙정부와 사업 시행자도 해지시지급금의 일부를 분담토록하여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한 기관들의 합리적인 위험분담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있는 사업시행을 도모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간 합리적인 책임분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민투기본계획’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3.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